

스포츠 정신의 고양, 공정한 경쟁, 선수의 건강보호

kada

한국도핑방지위원회

Play True

수신자 대한체육회장(체육진흥본부장)

(경유)

제목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 5. 30(토) ~ 6. 2(화)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가운데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 Therapeutic Use Exemption)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선수는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맹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 4항

나. 대상선수 :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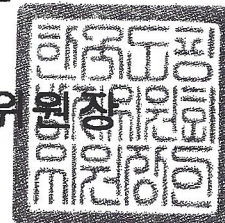
다. 신청기간 : 2015. 3. 12(목) ~ 4. 29(수)

라. 제출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

※ TUE 신청은 응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 최소한 대회 30일전에 신청해야하므로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치료목적사용면책(TUE)신청 안내자료 1부. 끝.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행정관 박찬 부장 이규환 실장 전결 03/11
심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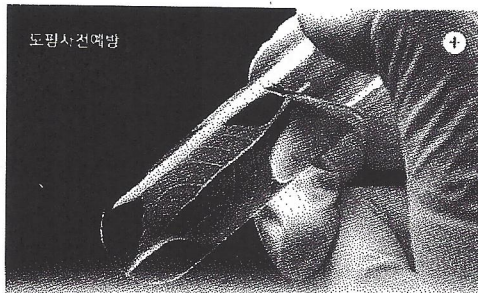
협조자

시행 도핑검사부-138 (2015.03.11.)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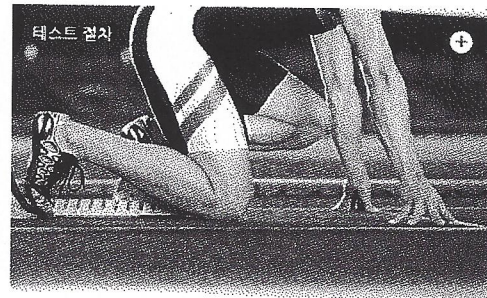
우 134-88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99 다성빌딩 301호 /http://www.kada-ad.or.kr
전화 02-2045-9833 /전송 02-2045-9898 / chanpark@kada-ad.or.kr / 공개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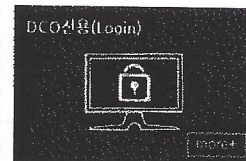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 방문
- “금지약물검색” Click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는 선수의 고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이 되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엄격한 책임원칙(The Rule of Strict Liability)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핑검사는 검사 시기에 따라 경기기간중 검사와 경기기간의 검사로 나뉘어지며, 채취 시도에 따라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로 구분됩니다.



2. “금지약물검색”기능을 통해 “금지약물” 여부 확인

위의 이용조건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네, 이용조건에 동의합니다. ☐ 아니오, 이용조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색자 해당 종류: 직업:

담당안내

기획홍보부 이삼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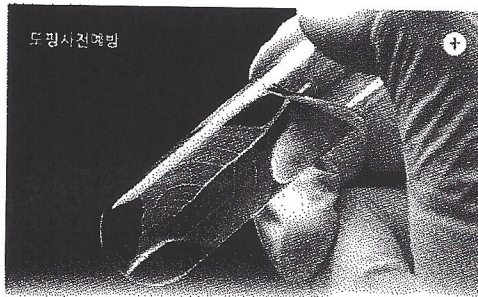
전화

02-2045-9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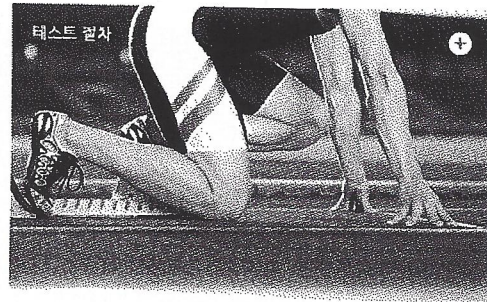
이메일

guava339@kda-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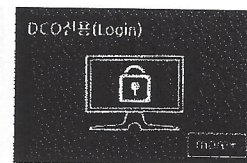
3.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목적 사용면책” 메뉴 Click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는 선수의 고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이 되며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엄격한 책임원칙(The Rule of Strict Liability)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핑검사는 검사 시기에 따라 경기기간중 검사와 경기기간외 검사로 나뉘어지며, 채취 시도에 따라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4. “치료목적사용면책” 확인 후, 우측 “양식다운로드”를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제출

선수 및 지도자

홈 > 선수 및 지도자 > 치료목적사용면책

치료목적사용면책

도핑 사전예방

나는 도핑검사 대상자인가?

금지약물 및 방법

치료목적사용면책

선수소재지 정보 및 ADAMS

테스트 절차

계재 및 항소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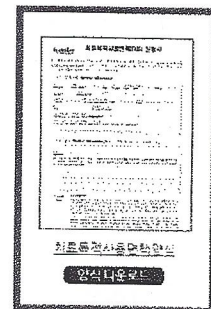
은퇴와 복귀

□ 치료목적 사용면책 (Therapeutic Use Exemption)이란 무엇인가

선수도 질병이나 부상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해야 할 약물이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거나 병합이라면 선수에게는 추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이며, ‘선수가 금지약물 도핑 금지항목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허가(승인)받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절차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FAX : 02-2045-9898, EMAIL : tue@kada-or.kr)

※ 문의처 : 02-2045-9835 (도핑검사부 이상민 행정관)